## KOSHA GUIDE

C - 85 - 2013

- (나) 재료의 결함 유무 또는 기구 및 공구의 기능을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하는 일
- (다) 작업 중 안전대 또는 안전모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
- (3)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작업 전에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가) 근로자 떨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나) 자재에 의한 맞음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다) 근로자 넘어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라) 깔림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마) 무너짐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 (4)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작업계획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작업구역 내 출입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작업을 하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 (6)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등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기관의 검정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트럭 탑재형 크레인은 2009.10.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안전인증 대상이므로 과부하방지장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른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기준에 의거 안전인증을 득한 제품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 (7) 강풍(순간풍속 10m/s이상) 등의 악천후 시 인양작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또는 제383조 철골작업